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경찰공무원 징계령」을 참고하여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·회피·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을 준용하여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(義死傷者)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단계 간소화(안 제36조)

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자 제6차시험을 폐지하여 현행 제5차시험에 병합함

나.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보완(안 제38조)

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기 실시 중인 종합적성검사를 조문에 명기하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모집 결과,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같거나 적으면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함

다.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(안 43조의2 신설)
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

라. 사회취약계층 응시자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(안 제44조)

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 계층 포함)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제하고, 증빙서류 제출 없이 채용 담당자가 ‘행정정보 공동이용’을 직접 조회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

마.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, 이해관계 개입 시 통제(안 제46조의3)

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외부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, 전문 자격 구체화, 이해관계 위원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마련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5호 중 “종합적성검사”를 “면접시험(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
제3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”를 “신체검사, 체력검사, 종합적성검사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(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4항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할 수 있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의사상자에 대한 우대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를 준용하고, 이 경우 “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”은 “경위 이하 신규채

용시험”으로, “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”은 “이 영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”으로 본다.

제4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
3. 가족관계증명서

제46조의3제2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하”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”

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인사·법률·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한다.

가. 법관·검사·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법학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

나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인사·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 다만,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경찰청 및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.

다.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노동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

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

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 조사 또는
감정(鑑定)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
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⑥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
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
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기피(忌避)를 신청할 수 있고, 심의
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
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
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
로 해당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⑧ 경찰청장은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
고,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
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시험의 구분 등) ①공개경 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 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 다. 다만,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 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.	제36조(시험의 구분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5차시험 : <u>종합적성검사</u> <u><단서 신설></u>	5. ----- <u>면접시험(종합적</u> <u>성검사를 포함한다).</u> 다만, <u>실</u> <u>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</u>
6. 제6차시험: <u>면접시험. 다만,</u> <u>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8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)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(법 제10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 용시험등은 제외한다)은 <u>신체검</u> <u>사 및 체력검사와</u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. 다 만,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 의 방법으로 하고, 총경 이하의	제38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) ①----- ----- ----- <u>신체검</u> <u>사, 체력검사, 종합적성검사 및</u> ----- ----- -----

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
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
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
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 본문
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
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
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
다 적은 경우(응시자가 없는 경
우를 포함한다)에는 시험실시일
을 다시 정하여 제4항 단서에
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
고를 할 수 있다.

제43조의2(의사상자에 대한 우대)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제
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
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
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
가산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
시험령」 제31조의2를 준용하
고, 이 경우 “6급 이하 공무원
채용시험”은 “경위 이하 신규채

제44조(응시수수료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용시험”으로, “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”은 “이 영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”으로 본다.

제44조(응시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시험

제46조의3(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
설치 등) ① (생 략)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
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
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한다.

③ (생 략)
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
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(생 략)

2. 인사·법률·노동 분야의 학
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

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
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
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
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
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
상위계층 확인서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
른 한부모가족증명서

3. 가족관계증명서

제46조의3(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
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-- 이하-----
----- 구성
하되,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
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
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-----

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

가. 법관·검사·변호사로 5
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
호의 학교에서 법학 관련
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
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
재직한 사람

나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
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
인사·감사 업무에 대한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
람. 다만, 퇴직 전 5년부터
퇴직할 때까지 경찰청 및
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
직제」 제2조에 따른 소속
기관에서 근무했던 적이
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
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
한다.

다.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
근무한 사람 또는 「고등
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
학교에서 노동 관련 학문
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

<신 설>

<신 설>

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
한 사람

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가 된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
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
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
조사 또는 감정(鑑定)을 한 경
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
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이었던 경우

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
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
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
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
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
심의위원회에 기피(忌避)를 신

<신 설>

<신 설>

⑤ ~ ⑦ (생 략)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청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⑧ 경찰청장은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⑨ ~ ⑪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
⑪ ----- 제10항-----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2832